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846호

국유재산 무단 점용·사용에 따른 행정처분(원상회복 명령) 공시송달 공고

「국유재산법」 등을 위반하여 국유재산(덕교동 103-21)을 무단 점용·사용(그물망 적치) 중인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74조(불법시설물의 철거)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송달하려 했으나, 점유자 미상 또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시행령 제5조(서류의 송달)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16일

인 천 광 역 시 영 종 구 청 장

1. 공고 내용: 국유재산 무단 점용·사용에 따른 행정처분(원상회복 명령) 공시송달 공고
2. 위 치: 인천광역시 영종구 덕교동 103-21
2. 공고 기간: 2026.11.16. ~ 2026.12.18. (43일간)
3. 공고 사항: 붙임문서 참조
4. 공고 방법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5. 지시 및 고지사항
   - 우리 구 국유재산(덕교동 103-21) 내 적치물(그물망)을 자진 원상회복(철거)하여 주시기 바라며, 2026.12.18.(금)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제74조(불법시설물의 철거) 및 「행정대집행법」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하고 대집행 비용은 「행정대집행법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.
   - 아울러 이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(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)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, 행정법원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(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)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-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.
6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중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(☎032-760-7847)

[붙임]

☐ 덕교동 103-21 위성사진



☐ 덕교동 103-21 현장사진

